

시대변화와 教授協議會의 進路

安相憲
(忠北大 哲學科)

문민정부의 대학교육개혁은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만들어진 현행 교육관계법령의 비민주적인 조항의 개정을 통해, 대학에서 실질적인 민주적 의사결정기구로 기능하고 있는 교수들의 종의기구인 교수회와 대의기구인 교수평의회를 학칙기구화함으로써 대학 자율화와 민주화의 기틀을 세우는 데서 출발해야 하며, 현 교수협의회 체제가 합법적인 기구로 전환하는 동시에 발전적으로 해체되면 대학 당국과의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이 해소되고 대학교육의 질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1. 大學教育 改革과 教授協議會

새 정부는 권위주의적인 군사정권 아래에서 저질러진 부정부패의 일단을 제거하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친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대학교육 관련 부문에 있어서도 부정입학자의 명단 공개, 대입학력고사 탑안 누출사건 수사, 사학의 비리 수사 등을 통해 이에 관련된 재단과 관련 학부형들에 대한 사법조치와 교육관료들에 대한 속정을 단행하는 등 교육계의 뿌리깊은 부정부패에 대한 처결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건 개혁정책은 과거의 비리를 밝혀내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비리의 근원이 되는 인적 법적 제도적 모순을 개혁하고

새로운 제도를 확립함으로써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문민정부의 진정한 대학교육 개혁은 권위주의적인 정권 아래에서 정권유지를 위해 대학통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반 제도와 정책을 과감하게 개혁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

이미 우리의 현행 헌법(제22조, 제31조)에는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과 함께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조항은 대학교육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행 교육관계법령에는 입학정원, 대학원 및 학과 신설, 교과과정 및 졸업이수학점, 졸업연한 등과 같은 대학제도와 운영 전반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대학 자율성의 저해 요인들이 산재하며,

심지어는 각종 규정과 지침을 통해 교육부가 대학운영의 세부사항까지 일일이 통제, 간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학교육개혁은 바로 이러한 제도와 법령의 대폭적인 개혁을 통해 교육부와 교육관료들에게 주어져 있는 대학제도와 운영에 대한 중요한 권한을 대학과 대학교육의 실질적인 주체인 교수들에게 되돌려 주는 과감한 대학 자율화 정책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87년 이후 새로운 형태로 출발한 교수협의회는 대학의 대외적인 自律化와 대내적인 民主化라는 기치 아래 대학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실제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공립대학에서는 이미 모든 대학에서 교수협의회의 주관 아래 총장을 선출하고 있으며, 임명총장과 파견교육관료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오던 대학 운영을 쇄신하여 대학운영의 주요사항들에 대해서는 교수평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수협의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관계법령의 미비점과 교수협의회를 보는 교육관료들의 구태의연한 시각으로 말미암아 대학 자율화와 민주화의 토대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교수협의회와 대학 당국의 바람직한 관계가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대학교육 개혁은 이러한 대학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하여 그동안 과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대학교육을 조속히 정상화함으로써 21세기에 대비한 대학과 학문의 창조적 발전의 기틀을 세우는데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2. 現 教授協議會의 實質적 位相과 役割

'87년 이후 지금의 교수협의회는 '87년 이전의 교수협의회와 명칭은 동일하지만 그 성격이나 위상은 전혀 다르다. '87년 이전의 교수협의회는 한마디로 말해 교수들의 친목단체 혹은 상호부조단체에 불과했다. 교수들이 내는 약간

의 회비로만 운영되던 교수협의회는 교수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체육대회나 바둑대회를 개최하거나 1년에 한두 번 정도 간단한 만찬회를 가지는 것이 그 역할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교수협의회가 친목단체로만 운영될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대학운영권을 독점하고 있던 권위주의적인 정권과 대학당국이 교수협의회가 대학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일체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0년 5월 봄,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대학자율화와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시도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5공 정권이 들어선 이래 교수협의회는 다시 순수한 친목단체로 돌아가 그 명맥을 겨우 유지해 왔다.

그러나 사회민주화운동이 결정에 달했던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대학사회에서도 대학민주화운동이 서서히 가열되기 시작했으며, 교수협의회가 그 모체가 되었다. 대학의 사정에 따라 친목단체인 교수협의회가 환골탈태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수협의회로 탈바꿈하거나 이와는 무관한 세로운 교수협의회를 창립하기 시작하면서 교수협의회는 자연스럽게 質質的 학내議決機構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창립된 교수협의회는 ① 수차례의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통한 여론 수렴을 거쳐 교수회와 교수평의회를 의결기구로 하는 민주적인 학칙개정안을 마련하고, ② 단과대학에서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된 교수평의회를 발족시켰으며, ③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총장선출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총장을 선출하였고, ④ 오랫동안 비공개리에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예·결산의 공개와 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통해 대학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촉구하는 등 대학운영의 중요사항에 대해 의결기구로서의 실질적 위상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5공 정권에 이어 여전히 권위주의적이었던 6공 정권은 대학 자율화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의 이러한 노력을 전면 수용하기는커녕 교수협의회와 교수평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기 위한 교육관계법령의 개악을 단행하였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

화를 사학재단 자율화로 왜곡한 '私立學校法'을改惡하여 교수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들의 신분을 위협하거나 대량 해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으로써 교수협의회 활동을 무력화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교수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수들의 해직사태가 속출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국공립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실질적인 의결기구로서 기능해 온 교수평의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를 대체하는 '대학평의원회'라는 崎形的 機構를 교육법령에 신설하였으며, 총학장 선출에 대해서도 교수협의회 대신에 '총·학장후보추천위원회'라는 기이한 제도를 신설하여 '2인 이상의 후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교수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회복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6공 정권의 교수협의회에 대한 이렇듯 간교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교육법상의 '대학평의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총장 선출 또한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주관하지 못하고 '2인 이상의 후보추천'도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교수협의회가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일부 과격한 교수들로 구성된 임의단체가 아니라 전임강사 이상의 모든 학내 교수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의결기구이자 학내 구성원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유일한 기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당국자들은 교수협의회가 교육법상의 법정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거나 교수협의회의 창립정신이 그 동안 상당히 변질되었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하며 기회만 있으면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대학운영방식으로 회귀하려는 태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물론 대학에 따라서는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억눌린 감정을 일시적으로 분출한 경우도 없지 않았을 것이고 교수협의회나 교수평의회를 일선의 영달을 위한 발판이나 도구로 삼으려는 경우도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의 교수협의회나 교수평의회는 대학 구성원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은 실질적인 의결기구로서의

확고한 위상과 역할을 하고 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3. 教授協議會의 당면과제 :

教授會의 의결기구화

현 교수협의회의 당면과제는 실질적인 의결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교수협의회를 학칙상의 합법적인 의결기구인 교수회로 전환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대학교육의 질적 발전과 대학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실질적 주체인 교수로 구성된 教授會와 教授評議會의 의결기구화가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교수협의회가 대학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한 이후 대학은 이전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대학에서는 예·결산의 공개와 교수평의회의 심의·의결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예산의 공개와 심의를 거치는 대학에서도 사무국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말미암아 불합리하거나 소모적인 예산낭비가 심하며 전체 예산 중에서 교육과 연구 부문에 책정된 예산이 불과 2~5퍼센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밖에도 대학운영의 합리화와 효율성이 요구되는 과제들도 적지 않으며, 국립대학의 경우 대학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적절한 인사관리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대학경영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학재단과는 달리 국공립대학은 방만한 보직과 행정직원이 있으면서도 대학행정의 효율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불요불급한 보직과 기관의 조정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대학자율에 의한 각종 규정의 개폐와 학칙의 전면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듯 산적해 있는 대학교육과 운영의 근본적인 당면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수협의회를 통해 학내 교수들의 의사가 충분히 수렴되고 代議機構인 교수평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만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과도기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교수협의회와 대학당국의 갈등과 마찰은 교수협의회가

실질적인 학내 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관계법령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인 合法的學則機構가 되지 못한 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 현행 교육법령과 학칙에 따라 대학운영을 해야 하는 총장과 대학당국이 교육부와 교수협의회 사이에서 겪는 고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 당국과 교육부에 대해 비민주적인 교육관계법령의 개정과 대학자율화를 요구하지는 못하면서 교수협의회에 대해서만 공식적인 학칙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교수협의회를 적대시하거나 폄하하는 태도는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다.

교수협의회로서도 이러한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학당국보다는 현행 교육관계법령에 있다고 보고, 이미 창립 초기부터 교수협의회와 교수평의회의 학칙기구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학칙안을 만들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현행 교육관계법령과의 저촉을 이유로 개정학칙안의 승인을 계속 거부하면서 반복해 왔기 때문에 전국 교수협의회는 현행 교육관계법령 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으며 이미 '90년과 '92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청원서명운동을 벌여 국회에 청원한 바 있다.

교수협의회의 교수회로의 전환과 합법화가 절실한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법령에 맞춘 현행 학칙의 골격이 되는 ‘직제와 기구’ 편이 완전히 死文化되어 있다는 점이다. 학칙상에는 ‘총장이 의장이 되는 교수회’와 앞에서 설명한 교육법상의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기구는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현행 학칙에는 교수협의회가 주관하는 총장선출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없기 때문에 국공립대학의 직선 총장은 교수협의회 회칙이라는 실질적인 근거는 있으나 합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현재 대학운영은 현행 학칙과 교수협의회 회칙을 편의주의적으로 취사 선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교수협의회와 교수평의회의 의결사항은 총장의 편의대로 때로는 수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결정을 하고

있어 무원칙한 대학운영이 하나의 원칙이 되다시피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教育關係法令을 改正하여 현 교수협의회를 교수회로 전환하여 학칙기구화하는 길뿐이다. 이는 문민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과도 부합하며, 교수협의회와 교수평의회의 실제적인 구성, 운영, 기능, 역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수협의회와 교수평의회의 학칙기구화는 가장 현실적인 대학 자율화 방안이다.

그리고 교수협의회의 학칙기구화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현재의 대학운영을 엄청나게 바꾸어 놓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수년간 교수협의회와 교수평의회의 실질적 역할을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수협의회가 비합법기구이기 때문에 야기되는 제반 문제들이 정리됨으로써 대학운영이 한층 원활하게 될 것이고, 교수협의회와 교수평의회뿐만 아니라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평교수들의 관심도도 높아져 결국은 대학교육과 운영이 매우 활성화되어 대학교육의 발전이 가속될 것이다.

또한 총장과 대학당국도 지금까지 실질적으로는 교수협의회와 교수평의회를 학내 의결기구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면서도 다만 현행 교육관계법령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임의 단체로 간주하는 二重性으로부터 벗어나, 대학운영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수협의회는 대학운영의 제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수협의회를 의결기구인 교수회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현행 교육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교수협의회는 合法的學則機構인 교수회로 전환하게 되고, 교수평의회는 현재 사문화되다시피 한 현행법상의 ‘대학평의원회’를 대체하는 합법적인 학칙기구로 그 위상과 역할을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학에서 實質的 議決機構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교수협의회와 교수평의회가 합법화하면 총장이나 대학당국과 교수협의회의 불필요한 갈등이나 마찰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4. 教授會와 教授評議會의

바람직한 위상과 역할

현행 교육관계법령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어 교수협의회가 교수회로 전환되고, 대의기구인 교수평의회가 학칙기구로 편입되면 현재의 교수협의회 규정은 새롭게 손질되어 학칙의 부속규정으로 귀속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수회와 교수평의회는 학칙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각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는 학칙과 부속규정에 따라 교수회와 교수평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이 다소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수협의회와 교수평의회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교수회는 대학의 최고의 결기구가 되고, 교수평의회는 그 대의기구로서 집행기구인 총장기구와二元的關係를 유지하면서도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적절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총·학장을 교수협의회에서 선출하고 있으며, 대학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집단일 뿐만 아니라 집행기구와 대의기구를 이원화하지 않고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성인 집단이라는 점을 들어 집행기구와 대의기구의 이원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대학 자율화와 민주화 수준에서 나오는 당연한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기초행정 단위에 있어서도 집행기구와 대의기구를 분리, 운영하는 이 시점에서 굳이 대학에서만 민주주의적인 ‘牽制와 均衡’의 대원칙을 포기하고 집행기구와 대의기구의 일원화를 고집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대학사회가 가장 후진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실증하는 단적인 실례가 아닌가 생각된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대학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교수회와 교수평의회의 권한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학사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집행부에 대폭 위임하는 등의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총장 개인의 자질이나 인격에 의존하지 않고도

大學運營의 合理性을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수평의회 구성에는 단과대학에서 선출된 평의원만이 아니라 학내 주요 보직교수(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연구처장, 사무처장제가 실시되면 사무처장)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집행기구와 대의기구의 협조체제와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대학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교수평의회측에서는 주요 보직자들의 평의회 출석을 의무화하여 대학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의를 줄일 수 있고 집행부측에서는 대학운영의 실태를 교수평의회에 충분히 보고·설명함으로써 교수평의회의 잘못된 결정 가능성에 사전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될 것이다.

5. 맷음말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전국 대학의 교수협의회는 스스로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해온 통치자의 교육개혁 의지와 정부의 대학교육개혁정책에 상당한 기대를 걸면서 그 추이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교수협의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학 교육의 뚜렷한 개혁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현 단계에서 ‘시대변화’를 설불리 입에 올리기는 사실상 이르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교육부장관이 기회 있을 때마다 대학 자율화와 학칙의 자율적 개정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교육관계법령의 개정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후속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는 바이지만, 오로지 대학통제를 그 목적으로 해왔던 현행 教育關係法令의 과감한改正 없이는 대학교육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차제에 시대가 변화했으니 교수협의회도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논리는 아직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과거의 대학 관련 비리가 파헤쳐지고 총·학장의 재산등록이 이루어진다 해서 대학 자율화와 민주화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교수협의회의 시작에서 볼 때 진정한 ‘시대변화’는 대학의 자율성이 얼마나

신장되었는가,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이 얼마나 제고되었는가, 대학의 자율화와 민주화의 기틀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얼마나 정착되었는가 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관계법령의 민주적인 개정과 非民主的 교육제도의 改革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교수협의회의 변화를 바라는 것은 한낱 교육관료들이나 대학 당국자들의 소박한 소망에 지나지 않는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행 교육관계법령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고 학칙개정을 비롯한 대학 자율화의 토대가 정착되면, 교수협의회는 자연스럽게 정부와 대학당국에 대한 투쟁과 견제를 지양하고 학칙기구인 '교수회'로 전환하는 동시에 발전적인 모습으로 해체될 것이다. 그러나 세 정부조차 과거의 교육관료나 대학 당국자들처럼 교수협의회를 일부 진보적인 교수들이 중심이 되는 임의단체로 간주하여 백안시하려 한다면, 교수협의회는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투쟁하는 길밖에 다른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진정한 대학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관료 및 대학 당국자들의 교수협의회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교수협의회에서 선출된 총

장을 비롯한 대학당국자들은 교수협의회와 한마음이 되어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과 교수협의회의 갈등과 마찰이 상존하는 대학의 공동체는 대부분의 경우 한결같이, 총장선출 당시에는 교수협의회가 주관하는 총장선거제도를 겸허히 받아들여 교수협의회 규정에 따라 교수협의회에서 선출되었으면서도 일단 총장으로 임명되고 나면 총장의 태도가 180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 경우 대개는 총장즉이 집행기구에 대한 民主的 鉤制機構인 교수협의회와 교수평의회를 총장에 대한 적대기구로 오해한 나머지, 실정법을 근거로 임의단체 또는 불법단체로 간주함으로써 교수협의회와 불필요한 마찰의 원인을 제공하기 마련이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교수협의회나 교수평의회의 집행기구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인해 갈등과 마찰이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회의체로만 운영되는 교수협의회와 교수평의회의 성격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보다는 오히려 운영미숙에서 오는 사소한 문제가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결코 이러한 문제들이 교수협의회와 교수평의회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